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한편,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학과 등 간의 융합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 특정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없애고,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계약에 따라 설치된 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안 제8조제8항 신설)

산업체 등의 경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체 등이 부담해야 하는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 경비를 대신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나. 근무 경력자의 학점 인정 확대(안 제8조제11항)

- 1)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 학점 인정 대상을 종전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 등을 위하여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계약학과 등에 입학하는 사람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학과 등에 입학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2)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 종전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계약정원의 운영 분야 확대(안 제8조의2)

계약정원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분야로 확대함.

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사항(안 제42조제3항 신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해당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등으로 출자내역, 출자비율 또는 설립 주체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함.

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43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에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 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

무 등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 9. ~ 5.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을 “계약학과등”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부담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가 그 부담금을 대신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의2제1항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1.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계약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5. 계약정원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6. 계약정원이 그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수의 학생 보호에 관한 사항

제42조의 제목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을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의2제2항제4호”를 “법 제36조의2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6항에서 “출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자내역
2. 출자비율
3. 설립 주체

제43조제4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의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시설임대 업무
- 가. 자회사

나. 다른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다음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1)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2)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10.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가.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나.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26학년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① ~ ⑦ (생략) <u><신 설></u>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부담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가 그 부담금을 대신하여 부담할 수 있다.</u>
<u>⑧·⑨</u> (생략)	<u>⑨·⑩</u>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u>⑩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u>	<u>⑪ ----- 계약학과등-----</u> ----- ----- ----- ----- <u>100분의 25</u> ----- ----- -----.
<u>⑪</u> (생략)	<u>⑫</u> (현행 제11항과 같음)
<u>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u>	<u>⑬ ----- 제12항-----</u> ----- -----

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2(계약정원의 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학부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 중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한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하 “계약 정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

제8조의2(계약정원의 운영) ① -----
-----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
② 산업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1.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① (생 략)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1. 2. (생 략)
<신 설>

3. 계약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5. 계약정원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6. 계약정원이 그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수의
학생 보호에 관한 사항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5호---

--.

1. 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6조의2제6항에서 “출
자내역 및 비율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자내역
2. 출자비율
3. 설립 주체

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법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4. (생략)

4의2. 자회사에 대한 시설임대
업무

5. ~ 9. (생략)

10.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
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
체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시설임대 업무

가. 자회사

나. 다른 기술지주회사의 자
회사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다음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
업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1)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2)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5. ~ 9. (현행과 같음)

10.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등으로 이전하
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가.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나. 다른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11. (생 략)

제45조(자회사 주식보유의무 예외 사유) 법 제36조의4제4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술지주회사가 지분 양도
등으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
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2.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
하여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
터 10년 이내인 경우

3.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
합원에 우선 배정하여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
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
내인 경우

4.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11. (현행과 같음)

<삭 제>

<u>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같은 법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신 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이 행사되어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u> <u><신 설></u>	<u>제47조의2(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 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6261